

종 약



2026.03.27

연주현씨대종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과 사무소) 본회는 연주현씨대중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송조애족의 정신을 받들어 종친의 번영과 상호 친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조직) 본회는 전국 및 해외에 기반을 둔 종친회(화수회, 친족회), 청년회, 여성회 등 현씨 중심 조직을 근간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선조의 유적보전과 송조사업
2. 종친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3.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4. 전자족보(대동보)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모든 현씨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전자족보(대동보)에 등재할 수 있다. 성인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제4조의 목적 사업에 참여 및 수혜의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대중회 구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주현씨로서의 품위유지
2. 각종 행사와 모든 사업에 참여 또는 협찬

제 3 장 기 구

제 8 조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협의회
4. 운영 위원회 및 특별 기구
5. 사무처

제 4 장 임 원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 그리고 명예회장, 고문 및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둔다.

1. 회장 : 1 명
2. 감사 : 2 명
3. 수석부회장 : 1 명
4. 부회장 : 50명 이상
5. 이사 : 200명 이상
6. 사무처장 : 1 명

제 10 조 (임원선출 및 명예회장과 고문의 추대)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직전 회장이 후임 회장을 천거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회장단협의회 추인 후 위촉한다.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추천하고 회장단협의회 추인 후 임명한다.
4.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
5. 고문과 지도위원은 회장단협의회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6.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지역 및 계파 종친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 및 계파 종친회 추천으로 부회장이 될 수 있다.
7. 사무처장은 회장이 본회의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이외의 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회장단협의회와 협의하여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회장단협의회 의 의장이 된다.
2. 감사 : 감사는 제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처 업무를 지도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 : 회장단협의회 회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부회장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이사 :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6.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본회 사무실에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회의 사무 및 회계업무, 그리고 본회 유지 발전을 위한 실무를 책임진다.

제 5 장 총회

제 13 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1. 총회는 전체 종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마지막 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총회는 소집 15일 전까지 총회의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통지해야 한다.(이하, SNS라 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종약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개최하며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종약의 개정과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17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종류)

1. 이사회는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총회 개최 전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할 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소집 15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SNS(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회장단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2. 이사회는 최소 15명 이상의 출석 인원으로 개최하며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개최 전까지 도착한 위임장(SNS 포함)은 의결 정족수에 합산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 SNS(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종약의 개정과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

이사회 구성원은 종친회 간부로서 품위를 지키고 친족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회장단협의회

제 21 조 (회장단협의회회의 구성) 회장단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청할 수 있다.

제 22 조 (회장단협의회회의 소집)

1. 회장단협의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 필요시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단협의회는 소집 15일 전까지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SNS(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통지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온라인(화상회의, 카카오톡 팀채팅방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회장단협의회 운영)

1. 대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경상사무비 지출을 제외한 기금의 운용을 의결한다.
3.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4. 최소 10명 이상의 출석 인원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종약의 개정과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개최 전까지 도착한 위임장(SNS 포함)은 의결 정족수에 합산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 SNS(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 및 특별 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재 정

제 2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수입) 본회 운영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부회장 연회비, 이사 연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 26 조 (재산의 정의와 관리)

1. 본회의 모든 기금과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한다.
2. 본회의 모든 기금과 재산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연대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 27 조 (결산 및 감사) 회장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감사를 받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서류의 구비) 회장은 종약 및 제 규정, 재산 명세 및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및 각 회의의 회의록을 본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장 상벌

제29조 (포상) 본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단협의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현씨 문중의 명예를 드높인 자

제 30 조 (징계)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회장단협의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31 조 (세칙 및 관례) 본 종약에 미비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32 조 (시행)

1. 본 회칙은 서기 1987년 12월 14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서기 1989년 4월 30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종약은 서기 1990년 5월 27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종약은 서기 1991년 5월 26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종약은 서기 1992년 5월 31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종약은 재단법인 연주현씨대중회 유지재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7. 본 종약은 서기 1996년 5월 31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종약은 서기 1998년 5월 31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종약은 서기 1999년 5월 31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종약은 서기 2002년 5월 28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종약은 서기 2005년 5월 29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종약은 서기 2006년 3월 31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종약은 서기 2008년 4월 29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종약은 서기 2010년 3월 30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종약은 서기 2012년 4월 17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종약은 서기 2013년 3월 27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본 종약은 서기 2016년 3월 29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본 종약은 서기 2020년 9월 30일 서면총회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본 종약은 서기 2026년 3월 27일 총회 통과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